

요 약

- 9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은 희망법인의 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편향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를 채택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겸업, 계열관계 등이 금지되고, 판매업자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특정 금융회사 상품에 한정된 자문 내지 특정 회사·상품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됨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활성화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음
 - 2017년 독립성 요건 등 유사한 규제를 적용한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등록 건수가 전무할 정도로 활성화에 실패한 바, 주된 원인으로 (i) 제도적 차별성 부족, (ii) 불투명한 수익성, (iii)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거론됨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독립투자자문업자보다 상품 취급 범위가 넓은 점에서는 차별성이 있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독립성 요건 및 수익구조의 불확실성은 동일하게 문제될 수 있음
 - 그러나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전망을 예측하기 이른 점이 있으므로, 시행 이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료됨
- 보험회사 및 GA 등 보험모집채널은 자문업을 겸영하거나 금융상품자문업자와의 제휴로 수익을 얻기는 어려우나, 다른 한편으로 모집에 부수하여 행하는 자문/상담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플랫폼과 핀테크 발달 등으로 보험상품 모집 경로에는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임
 - 향후 금융소비자의 실효적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1. 서론

- 지난 9월 25일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가 시행됨¹⁾
 - 이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제도가 있을 뿐,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행위는 규제 사각에 위치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받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함
- 입법 단계에서 정부안은 독립성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자문업자만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시기별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를 채택함
 - 2012년 정부안은 모든 경우에 독립성을 요하였으나 그 의미가 느슨하여 금융상품 판매업 겸영도 가능했으며, 2017년 정부안은 독립성을 갖춘 경우(겸영·임직원 겸직·계열관계 금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양측을 모두 인정했음
 - 반면 최종적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겸영·임직원 겸직·계열관계 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독립성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함
 - 다만, 독립성은 행위 규제가 아니라 등록요건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반드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하면 됨
-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은 희망법인의 독립상품자문업 등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²⁾하였으나, 엄격한 독립성 요건 및 행위 규제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사전등록 수요 파악 시 등록을 희망한 곳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³⁾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와 유사한 취지로 2017년 5월 자본시장법상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최근까지 독립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한 사례가 전무한 점도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음
- 이하에서는 새로 시행된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자본시장법상 독립투자자문업자와의 비교 등을 통해 향후 제도 활성화 전망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어보기로 함

1) 2020년 3월 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난 2021년 3월 25일 대부분의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9월 25일부로 시행됨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8. 25),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머니투데이(2021. 8. 24), ““돈 내고 보험·대출 상담받는 사람 없을텐데...” 다음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도입”(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410254974108)



2.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의 개요

-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이하, ‘금융상품자문’)을 말함(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4호)
 - 다만, 규제 필요성이 적은 다음의 자문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함(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동 감독규정 제2조 제4항)
 - (출판물·방송을 통한 조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거나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⁴⁾
 - (변호사 등의 자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인, 공인회계사가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 (집합투자기구·채권·신용평가회사의 자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동법 제12조 제1항)
 - 다만, 개별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i)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ii) 인·허가 내지 등록 없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제1호, 제2호)
 - 예컨대, 자본시장법상 등록을 마친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음
 - 시행일인 9월 25일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개별 금융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동법 제67조 제1호)
 - 법률에 근거 없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자문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을 것(독립성 요건), 즉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일 것을 요함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 은행 등)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대리점 등)를 경영하는 것은 물론, 이들과 계열관계에 있거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자본시장법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동법 제7조 제3항)하고 있으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조언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신고 대상으로 함(동법 제101조)

〈표 1〉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독립성 요건

법 제12조 제4항 제6호 각목

-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은 제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농협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협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경영하지 아닐 것**
-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은 제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회사**가 아닐 것
-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 받은 자가 아닐 것**
-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영업행위 일반원칙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음

- 영업행위 일반원칙인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기준⁵⁾(제13조), 신의성실의무 및 금융소비자이익우선의무(제14조), 차별 금지(제15조) 및 관리책임(제16조)이 모두 적용됨
- 또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적합성원칙(제17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광고 규제(제22조)가 적용됨
 - 적정성원칙(제18조)은 계약 체결 권유 없이 금융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이에 더하여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칙(제27조)을 준수하여야 함

-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제1항 및 제2항)
-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소정의 고지사항⁶⁾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내보여야 함(제3항)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니면 ‘독립’이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어 문자⁷⁾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제4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6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된 보수를 받는 등 금융소비자와 이해 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음(법 제27조 제5항)
 - 특정 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해 자문하거나, 특정 판매업자나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됨

5)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적용되도록 함

6)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단,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금융상품판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 계약 체결 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자문 업무의 제공 절차 등을 말함

7)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일본어·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함(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표 2〉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금지행위(이해상충행위)

법 제27조 제5항
•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 관련,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 포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 •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 자문계약 체결 이후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기타 투자성 상품에 관한 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독규정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⁸⁾



3.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 활성화에 대한 전망

- 2017년 도입되었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된 자본시장법상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와 취급 상품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독립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함

〈표 3〉 독립투자자문업자 및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 비교

구분	독립투자자문업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취급상품	• 투자상품(+예금상품)	•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상품
독립성 요건· 행위 규제	• 투자일임업 외 타 금융업 겸영 금지 • 타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문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않을 것 • 특정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하여 자문하지 않을 것(예외 有¹⁾)	• 금융상품판매업 겸영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열관계,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않을 것 •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하지 않을 것(예외 無) • 기타(금융소비자 개인정보등 부정사용,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 광고, 자문 업무 제3자 위탁 금지)
자격 요건	• 주식회사 또는 특수은행	• 법인
인력 요건	• 금융투자협회 인증 전문 인력 1인(1년 이상 경력) 이상	• 상품별 금융위원회 지정기관 인증 전문 인력 1인 이상
물적 설비	• 해당 없음	•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8)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분기별로 임직원의 투자성 상품을 매매한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말함

〈표 3〉 계속

구분	독립투자자문업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자기자본	• 2.5억 원(모든 투자 상품)/1억 원(펀드, ELS, RP, 예금)	• 투자성 상품(좌동)/그 밖의 상품(1억 원)
사회적 신용	• 법령상 사회적 신용 갖출 것	• 좌동
임원결격 사유	• 지배구조법상 요건에 적합할 것	• 좌동
이해상충 방지	•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 온라인 전용 법인은 알고리즘 요건, 기타 법인은 방지 기준 문서화, 교육·훈련 체계 및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등

주: 1) 다만, 특정 금융회사 등이 운용·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수료, 보수 등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는 최근까지 등록 건수가 전무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한 바, 주된 원인으로는 일반(비독립) 투자자문업자와의 제도적 차별성 부족, 불투명한 수익성, 낮은 인지도 등이 거론됨⁹⁾

- (제도적 차별성 부족) 법인격과 최저 자본금 및 각종 규제 측면에서 일반투자자문업자와 동일함
 - 개인과 법인 모두 영위가 허용된 보험중개사와 달리, 법인이 아니면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될 수 없어 개인사업자 신분의 투자권유대행인이 자문업으로 진출하는 데 진입장벽이 있음
- (불투명한 수익성) 이처럼 제도적 혜택이 없는 반면, 독립투자자문업자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투자자 외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
 - 투자자와 금융회사 양측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존의 일반투자자문업자 입장에서는 독립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함
- (낮은 인지도) 2018년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에 불과했고, ‘이름만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2.3%에 그침

○ 또한 영국의 IFA제도에 비해 최소 자기자본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인력 요건도 엄격할 뿐 아니라,¹⁰⁾ 보험, 대출 등은 취급할 수 없었음

- 아울러 영국과 달리 국내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은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는 데 익숙해 굳이 수수료를 내고 투자자문업자를 이용하려 하지 않아¹¹⁾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

9) 정지수(2019),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자본시장포커스』, 2019-15호, pp. 2~3; 이형기(2020),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활성화 방안」, 『증권법연구』, 21권 제2호, pp. 174~175

10) 영국은 IFA 설립 시 최소 자기자본 수준이 2만 파운드(약 3천만 원) 또는 투자사업으로 창출되는 연소득의 5% 중 큰 금액에 해당되며, 인력요건도 학사 1년 수료에 해당하는 국가학점인증시스템 level 4를 갖춘 경우면 활동이 가능함(정지수(2019),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자본시장포커스』, 2019-15호, p. 3)

11) 서울경제(2021. 7. 20), “수익성 없다”...독립투자자문업 등록 4년째 ‘0’”(https://www.sedaily.com/NewsView/22OZIRM43N)

-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수익구조의 불확실성 문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판매업을 겸영하거나 판매사로부터 커미션을 수취할 수 없는 데 반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소비자는 별도의 자문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문에 이어 계약의 체결까지 가능한 판매대리·중개업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¹²⁾
- 아울러, 엄격한 독립성 요건으로 인해 기존에 금융상품에 관해 전문성을 지닌 금융회사나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이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자문업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요소임
- 보험상품 내지 보장성 상품으로 범위를 좁히면,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수요가 비자발적이며 사전에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상품자문 활성화 가능성은 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이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등록을 요하는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음
 - 현재 보험모집채널이 보험상품자문(특히 온라인상 보장분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이 보험회사에 대한 판매수수료(사업비)에 자문업자 보수까지 이중 부담하게 되는 보장성상품의 단독자문업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보험, 대출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상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투자자문업자와 차별성이 있음
 - 기존의 일반투자자문업자가 보험, 대출 등으로 자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¹³⁾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음
 - 최근의 비대면 트렌드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진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¹⁴⁾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임
 - 독립투자자문업 제도에 관한 2018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0%는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자문비용에 관해 서도 "기본 판매채널에서 받는 비용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어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84.9%였다고 함¹⁵⁾

12) 이성복(202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금융상품자문업 이슈」, 『자본시장포커스』, 2021-05호, pp. 3~4

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8. 25),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p. 3

14)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에 대비하여 온라인 전용 법인의 경우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코스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객관적이고 독립적 자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5) 정지수(2019),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자본시장포커스』, 2019-15호, p. 2

- 소위 리딩방 등 메신저와 유튜브 등을 이용한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¹⁶⁾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금융상품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짐작해 볼 수 있음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의 전망을 예측하기 이른 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4. 맺음말

-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 모집채널은 금융상품자문업을 겸영할 수 없고, 금융상품자문업자와의 제휴로 수익을 얻기도 어려운 반면, 현재 모집에 부수하여 행하는 자문 내지 상담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시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과 핀테크 발달 등으로 보험상품 모집 경로에는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실효적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16)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00년 11개였던 수가 2010년 94개, 2020년 말 현재 2,122개로 증가함(성희활(2021),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p. 414)